

평가강령 실행보고서 2016

2017.03

들어가는 말

Moody's Investors Service(이하 "Moody's")의 자회사인 한국신용평가(이하 "당사")는 2006년 7월 Moody's의 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이하 "Moody's CoPC")를 토대로 신용평가 프로세스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명시하고 있는 평가강령(KIS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이하 "KIS CoPC")을 제정하였습니다.¹

당사는 KIS CoPC를 준수함으로써 투자자와 발행사를 공정하게 대우함은 물론 당사가 자체적으로 생성한 기밀정보 혹은 발행사가 당사에 제공한 기밀정보를 보호하고 당사의 평가방법론, 평가정책과 관행 및 그것에 관한 자료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사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KIS CoPC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이하 "IOSCO")에서 제정하는 신용평가사의 행동규범인 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이하 "IOSCO Code")에 나와 있는 원칙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및 2015년 IOSCO Code의 개정에 맞춰 당사 또한 개정된 IOSCO Code 내용을 반영하여 2009년 8월 및 2016년 5월에 KIS CoPC를 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IOSCO Code에 명시된 원칙에 의견을 같이 하며, KIS CoPC를 통해 IOSCO Code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7년부터 KIS CoPC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6년 1월~12월까지의 KIS CoPC에 대한 준수여부 점검 결과와 관련 정책 및 규정의 변경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KIS 및 신용등급 개요

당사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질 높은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증권 혹은 그러한 채무증권의 발행사의 신용도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평가등급 및 관련된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credit commitments),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의 장래의 상대적

¹ 평가강령(KIS CoPC) 전문은 홈페이지(<http://www.kisrating.com/utility/codeofconduct.as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사 평가강령과 본 보고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준법감시실(02-787-23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 신용위험에 관한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입니다. 신용등급은 두가지 요소로 정의될 수 있는 있는 있는 바, 하나는 만기가 도래한 계약상의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부도 발생시 예상되는 금전적인 손실입니다. 투자이사결정 과정의 여러가지 속성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속성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변동성 등의 여타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서술이 아니며, 특정 채무증권을 매수, 매도 혹은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투자자가 해당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없습니다. 당사는 각각의 투자자가 매수, 보유 혹은 매도를 고려중인 각 유가증권에 대하여 스스로 분석 또는 조사하고 평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인식 하에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I. 평가강령의 개정

신용평가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신용평가사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책임 강화,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 강화의 필요성 제고에 따라 IOSCO는 2015년 3월 IOSCO Code를 보완 개정하였습니다. Moody's 또한 IOSCO Code의 개정내용과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 요구를 반영하여 2015년 12월에 Moody's CoPC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규제환경과 자본시장의 변화에 맞춰 국내 실정 및 당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개정된 IOSCO Code 및 Moody's CoPC 내용을 수정, 반영하여 2016년 5월 평가강령을 새롭게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은 규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및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 제고가 개정의 주요 방향으로 신용평가의 질과 공정성 제고, 이해상충방지, 애널리스트 교육, 리스크 관리 강화, 평가/영업분리 원칙 강화 등이 주요 개정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KIS CoPC의 주요 개정 내용을 조항별로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용어(Definitions)의 변경, 추가

개정전 KIS CoPC(2009.08)	개정후 KIS CoPC(2016.05)
(신설)	4. “평가인력”이란 (1) 애널리스트, (2) 신용평가에 참여하는 인력, 그리고 (3)신용평가서비스 관련 절차, 방법론 혹은 모델을 개발, 검토, 승인하는 평가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평가인력의 정의는 내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만을 통해 평가절차를 지원하는 직원을 제외한다.
(신설)	

	평가 정책 및 관행을 결정하는 내부 상시위원회인 평가정책위원회는 새로운 평가방법론 혹은 기존 평가방법론에 대한 변경을 승인한다.
(신설)	4. 영업부서는 KIS내에서 영업활동(sales and marketing)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영업활동이라 함은 신용평가서비스와 관련한 의뢰 및 계약(약정), 수수료 협의 및 책정, 세금계산서(invoice) 문의 및 발급, 그리고 고객별 수수료 또는 특정 거래처별 매출과 같은 영업관련 정보 및 이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논의, 회의 또는 이메일 등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말한다.
2. “무의뢰평가”라 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신용평가를 의미한다. a) 해당 발행사와 관련하여 최초로 이루어지는 신용평가이며 b) 해당 발행사의 평가의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KIS가 실시한 평가여야 한다.	2. “무의뢰평가”라 함은 피평가사의 평가의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KIS가 실시한 평가를 의미한다.
3. “불참여평가(不參與評價)”라 함은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신용평가를 의미한다. a) 발행사가 직전 12개월 동안 신용평가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b) KIS가 발행사에 대해 향후 신용평가과정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발행사가 이를 거절하였다.	3. “불참여평가(不參與評價)”라 함은 KIS가 발행사에 대해 향후 신용평가과정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발행사가 이를 거절(명백히 거절 의사를 표명 또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거절)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신용평가를 의미한다.
4. “신용등급공시자료 (Credit Rating Announcements)”라 함은 신규등급 부여, 기존 등급의 변경 또는 유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문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보도자료가 있다.	4. “신용등급공시 (Credit Rating Announcements)”라 함은 신규등급 부여, 기존 등급의 변경 또는 유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문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5. “신용평가 서비스(Credit Rating Services)”라 함은 신용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산출된 상품과 서비스를 의미하며, 신용등급, 관련 리서치, 데이터 상품 및 관련 분석 툴 등의 생성과 판매를 포함한다.	5. “신용평가 서비스(Credit Rating Services)”라 함은 신용등급 및 Outlook, Watchlist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신용평가 서비스는 기타 부수서비스를 제외한다.
6. “부수 서비스(Ancillary Services)”는 신용평가 프로세스와 관계는 있지만 반드시 신용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산출된 것은 아닌 상품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6. “기타 부수서비스 (Other Legally Permitted Services)”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국내 법규에 의거 KIS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중 신용평가 서비스가 아닌

	것을 말한다.
(신설)	7. “Rating Action”이란 신용등급 신규부여, 유효 등급에 대한 상향/하향조정(부도등급으로의 조정 포함), affirmation 혹은 등급의 철회를 의미한다.
기타 1. “발행사”란 채무증권 혹은 이에 준하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기타 1. “발행사”란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해당증권을 발행 또는 보증하는 법인(entity)이나 증권의 기저 신용을 달리 보장하는 법인(entity)을 의미한다
2. “기밀정보”란 신용평가과정과 관련하여 발행사 또는 그의 수권받은 대리인이 KIS에 제공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의 소유권이 정보제공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격상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명시한 정보를 의미한다. 단, “기밀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a) 이미 알려졌거나 추후에 공시될 정보 (중략)	2. “기밀정보”란 신용평가과정과 관련하여 발행사 또는 그의 대리인이 KIS에 제공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의 소유권이 정보제공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격상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명시한 정보를 의미한다. 단, “기밀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a) 이미 알려진 정보 (중략)
(신설)	f) 공시 가능성에 대해 발행사 또는 그의 계열사 혹은 대리인이 문서의 형태로 승인한 정보
(신설)	4. “수수료 협상”이란 신용평가 수수료와 관련된 협상 및 최종 수수료 결정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대내·외적인 논의 혹은 연락 (correspondence) 등을 의미한다.
(신설)	5. “피평가사”란 KIS에게 신용평가를 받았거나, KIS가 신용등급을 부여한 증권을 발행하거나, KIS가 신용평가서비스를 진행중인 법인 (entity)을 말한다.

애널리스트(Analyst), 평가인력(Rating Personnel), 발행사(Issuer), 피평가법인(Rated Entities), Rating Action 등 실무에서 혼용되던 주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용어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정책위원회 및 영업부서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고 무의뢰평가와 불참여평가에 대한 정의도 당사의 실정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평가과정의 질 및 공정성

개정전 KIS CoPC(2009.08)	개정후 KIS CoPC(2016.05)
<p>A. 평가과정의 질</p> <p>1.2 KIS는 엄밀하고 체계적인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여 유지한다. 가능하다면 그러한 평가방법론에 의거하여 결정된 신용등급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시계열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검증을 실시한다. 평가정책부서는 평가방법론 및 평가절차의 적절성과 완전성을 점검할 책임을 지는 동시에 평가방법론 및 평가절차에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승인할 책임을 진다.</p>	<p>A. 평가과정의 질</p> <p>1.2 KIS는 엄밀하고 체계적인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여 유지한다. 가능하다면 그러한 평가방법론에 의거하여 결정된 신용등급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시계열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검증을 실시한다. 평가정책부서는 평가방법론 및 평가절차의 적절성과 완전성을 점검하고, 평가정책위원회는 평가방법론 및 평가절차에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승인할 책임을 진다.</p>
<p>1.3 신규등급을 부여하거나 기존등급을 재검토하는 등 모든 Rating Action을 취할 때 애널리스트들은 KIS의 평가방법론에 의거해 시행한다. KIS의 애널리스트들은 KIS가 개발한 평가방법론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p>	<p>1.3 신용평가 시 애널리스트들은 적절한 경우 KIS의 평가방법론에 의거해 발행사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KIS의 애널리스트들은 KIS가 개발한 평가방법론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p>
<p>1.4 신용등급은 애널리스트 개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p> <p>신용등급은 KIS의 담당 애널리스트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이 알고 있는 정보로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를 반영하되 KIS가 기 공시한 평가방법론과 부합되는 방식으로 반영된다. KIS는 평가업무를 할당하거나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분석대상 크레딧 유형별로 등급을 판정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애널리스트들을 배정한다.</p>	<p>1.4 신용등급은 애널리스트 개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p> <p>신용등급은 KIS의 담당 애널리스트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이 알고 있고 평가와 유관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되 KIS가 기 공시한 평가방법론과 부합되는 방식으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KIS는 평가업무를 할당하거나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분석대상 크레딧 유형별로 등급을 판정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애널리스트들을 배정한다.</p>
<p>1.5 KIS는 평가자료보관에 관한 내부정책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신용등급의 근거가 되는 내부자료를 보관한다.</p>	<p>1.5 KIS는 신용등급의 근거가 되는 내부자료를 보관 시 평가자료 보관에 관한 내부정책과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KIS는 자료의 보관과 파기에 관한 정책과 통제수단을 도입, 관리, 시행한다.</p>
<p>1.7.3 구조화 상품의 기초자산의 위험특성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그 상품에 대해 기존의 평가방법론과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 판단</p>	<p>1.7.3 구조화 상품의 기초자산의 위험특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해 기존의 평가방법론과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 판단</p>

<p>B. 사후관리</p> <p>1.10 KIS는 신용등급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력 및 재원을 할당한다. KIS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모든 신용등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한다. 단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신용등급은 예외로 한다.</p> <p>(b)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어떠한 Rating Action(여기에는 신용평가의 중단도 포함된다)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야기시키는 정보를 알게 되었을 경우, 관련된 평가방법론에 의거하여 해당 신용등급에 대한 Review를 시작하며;</p> <p>(c) 상기한 Review의 결과 필요하다면 해당 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한다.</p>	<p>B. 사후관리</p> <p>1.10 KIS는 신용등급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력 및 재원을 할당한다. KIS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모든 신용등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한다. 단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신용등급은 예외로 한다.</p> <p>(b)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어떠한 Rating Action(여기에는 신용등급의 철회도 포함된다)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야기시키는 정보를 알게 되었을 경우, 관련된 평가방법론에 의거하여 해당 신용등급에 대한 Review를 시작하며;</p> <p>(c) 상기한 Review의 결과 필요하다면 해당 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한다. 또한, 방법론의 제정 혹은 개정 시에는 해당 방법론 제정이 유효한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적절한 기간 안에 필요한 rating action을 취한다.</p>
<p>1.11 제반 여건이 성숙되었을 경우 KIS는 구조화 금융 상품의 최초 등급 결정과 사후관리에 별개의 분석팀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각 팀은 각각의 기능을 적시에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KIS는 또한 적절한 시기에 기존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 및 시장 동향을 검토한다.</p>	<p>1.11 KIS가 최초 신용등급 결정과 사후관리에 별개의 분석팀을 사용하는 경우 각 팀은 각각의 기능을 적시에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KIS는 또한 적절한 시기에 기존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 및 시장 동향을 검토한다.</p>
<p>1.12. 발행사 또는 채무증권에 대한 공시등급을 철회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 KIS가 공시한 “등급철회정책(Rating Withdrawal Policy)”에 의거하여 평가의견을 공시한다. 단, 평가대상 채권의 만기 도래, 발행사의 부도, 청산 또는 여타 유형의 정부관리체제 편입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철회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1.12. KIS는 신용등급 공시자료 발표에 관한 정책과 통제수단을 도입, 관리, 시행한다. 신용등급공시자료는 발행사 또는 채무증권에 대한 공시 등급을 철회하는 경우를 포함한 Rating Action을 발표하는 자료이다. 단, 평가대상 채권의 만기 도래, 발행사의 부도, 청산 또는 여타 유형의 정부관리체제 편입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철회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C. 평가과정의 공정성</p> <p>1.16 KIS와 KIS의 애널리스트들은, 평</p>	<p>C. 평가과정의 공정성</p> <p>1.16 KIS와 KIS의 애널리스트들은, 평</p>

<p>가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는,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상관 없이, 특정 신용등급을 보장 또는 확약하지 않는다. 단, Structured Financing 혹은 이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한 사전검토는 예외로 한다.</p>	<p>가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는,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상관 없이, 특정 신용등급을 보장 또는 확약하지 않는다. 단, Structured Financing 혹은 이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한 사전검토는 예외로 한다. 또한, KIS와 KIS의 직원들은 피평가사, 투자자, 혹은 다른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용평가서비스 및 기타 부수 서비스 수주를 목적으로 잠재적 Rating Action에 대한 약속을 하거나 협박을 가하지 않는다.</p>
<p>1.17 KIS의 애널리스트는 KIS가 평가하는 구조화 금융상품의 설계에 대해 제안하거나 추천하지 못한다. 단, 본 금지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여 애널리스트가 (1) 당해 구조화 금융거래의 고유한 특성특정 사실이나 특성 및 발행사(혹은 발행사의 대리인)가 제안한 수정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분석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 및 (2) KIS가 제안한 사실 및 특성에 대해 적용될 때 신용평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사 또는 그 대리인과 일련의 논의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p>	<p>1.17 KIS의 직원은 발행사, 차주(obligor), 주관사(underwriter), 스폰서(sponsor) 등에게 발행사나 차주나 발행사의 조직구조, 법적구조, 자산, 부채 혹은 기타 활동에 대하여 권고나 제안을 할 수 없다. 단, 본 금지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주 내에서 신용리스크 평가를 위해 직원이 (1) 당해 발행사 혹은 채무에 대한 특정 사실이나 특성 및 발행사(혹은 발행사의 대리인)가 제안한 수정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분석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 및 (2) KIS의 평가방법론이 발행사 및 채무에 적용될 때 신용평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사 또는 그 대리인과 일련의 논의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p>
<p>1.19 KIS의 직원들은 법률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때 법률이나 본 평가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임원이 직원으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게 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준법감시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이러한 보고를 받게 되면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KIS의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직원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KIS의 웹사이트를 통해 익명 또는 비밀로 보고할 수도 있다.</p>	<p>1.18 KIS의 직원들은 법률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때 관련 법규나 본 평가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임원이 직원으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게 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준법감시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이러한 보고를 받게 되면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와 KIS의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직원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KIS의 웹사이트를 통해 익명 또는 비밀로 보고할 수도 있다.</p>
<p>1.20 KIS의 직원이 법률 또는 본 평가강령의 위반사항을 선의를 가지고 보고하는 경우 KIS의 경영진은 다른 직원 혹은 회사가 신고한 직원에 대해 보복하는 것을 금지한다.</p>	<p>1.19 KIS의 직원이 법규 또는 본 평가강령의 잠재적 위반사항을 선의를 가지고 보고하는 경우 KIS의 경영진은 다른 직원 혹은 회사가 신고한 직원에 대해 보복하는 것을 금지한다.</p>
<p>(신설)</p>	<p>1.20 KIS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 a) 신용평가 컨설팅 서비스(rating advisory)</p>

	service) 제공 b) 증권 또는 MMF 상품 등을 주관하는 broker나 dealer 활동
--	---

KIS CoPC는 금번 개정을 통하여 평가방법론의 제정 및 개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평가정책위원회
 회의 역할을 규정화하였으며, 자료 보관과 파기에 관한 정책과 통제수단을 도입, 관리, 시행할 것
 을 규정화하여 자료 관리 절차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신용평가사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방법론의 제정 혹은 개정 시에는 해당 방법론 제개정이 유
 효한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적절한 기간 안에 필요한 rating action을 취하도록 하였
 으며 신용등급 공시자료 발표에 관한 정책과 통제수단을 도입, 관리, 시행할 것을 규정화하였습니
 다.

또한, 신용평가 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1) 신용평가서비스 및 기타 부수서비스 수주를 목적
 으로 잠재적 Rating Action에 대한 약속 내지 협박하는 행위, 2) 발행사의 조직구조, 법적구조, 자산,
 부채 혹은 기타 활동에 대하여 권고나 제안, 3)신용평가 컨설팅 서비스(rating advisory service) 제공
 4) 증권 또는 MMF 상품 등을 주관하는 broker나 dealer 활동 등 당사 직원들의 금지행위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독립성 및 이해상충 방지

개정전 KIS CoPC(2009.08)	개정후 KIS CoPC(2016.05)
<p>A. 일반사항</p> <p>2.5 KIS는 자사의 신용평가 서비스 및 애널리스트들을 비평가 서비스, 컨설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여타 사업으로부터 업무상, 법률상, 분리시킨다. KIS의 신용평가 서비스와 반드시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않는 부수 서비스에 대해서도 KIS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그러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차 및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부수 서비스(Ancillary Services)가 의미하는 바는 본 평가강령 “I. 용어의 정의”에 기술되어 있다.</p>	<p>A. 일반사항</p> <p>2.5 KIS는 자사의 신용평가 서비스 및 애널리스트들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여타 사업으로부터 업무상, 그리고 가능한 경우 물리적으로 분리시킨다. KIS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그러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차 및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KIS가 새로운 기타 부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부서와 먼저 논의한다. 기타 부수서비스가 의미하는 바는 본 평가강령 “I. 용어의 정의”에 기술되어 있다.</p>
<p>B. 절차 및 정책</p> <p>2.6 KIS는 다음을 위한 내부 절차 및 메커니즘을 서면으로 제정한다:</p> <p>(a) KIS의 평가의견 또는 분석에 영향을 미치거나 등급결정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직원의 판단과 분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확인하고,</p> <p>(b)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제거하거나 관리하는 동시에 관련사실을 공시한다.</p>	<p>B. 절차 및 정책</p> <p>2.6 KIS는 다음을 위한 내부 절차 및 메커니즘을 서면으로 제정한다:</p> <p>신용등급 또는 신규 또는 변경 등급의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의</p> <p>(a) 식별 및</p> <p>(b) 제거 또는 관리 및 공개</p> <p>KIS는 신용등급 산정에 대한 대가를 발행사나 인수기관(underwriter)으로부터 지급받는 형태의 이해상충을 해소 및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p>
<p>C. 애널리스트 및 직원의 독립성</p> <p>2.12 신용평가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발행사와 평가 수수료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평가수수료 체계에 대해 단순히 인지하고 있거나 언급하는 것은 수수료 협상에 해당되지 않는다.</p>	<p>C. 애널리스트 및 직원의 독립성</p> <p>2.12 KIS는 신용평가와 영업 업무를 분리한다. 평가인력은 수수료 협상이나 영업활동에 참여하거나 영업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평가수수료 체계에 대해 단순히 인지하고 있거나 언급하는 것은 수수료 협상에 해당되지 않는다.</p>

	<p>영업 부서 직원은 신용 등급 결정이나 모니터링 혹은 평가 서비스 제공 시 사용하는 모델이나 방법론의 개발 또는 승인에 참여하지 아니한다.</p>
<p>2.16 KIS의 애널리스트 또는 관리자가 이해상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인 관계(가령 피평가사 또는 그 대리인의 직원과의 개인적 관계 등)를 갖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러한 관계를 지속 상관, 소속부서장, 인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KIS는 이러한 제보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에 근거하여 이해상충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p>	<p>2.16 KIS의 애널리스트 또는 관리자가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인 관계(가령 피평가사 또는 그 대리인의 직원과의 개인적 관계 등)를 갖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러한 자신의 관리자 또는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KIS는 이러한 제보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에 근거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p>
<p>2.17. KIS는 애널리스트 혹은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여타 직원이 KIS를 퇴직한 후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거래가 있었던 발행사 혹은 금융회사로 전직하는 경우 해당 애널리스트 및 직원의 과거 업무를 소급하여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p>	<p>2.17. KIS는 애널리스트 혹은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여타 직원이 KIS를 퇴직한 후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거래가 있었던 발행사 혹은 금융회사로 전직하는 경우 해당 애널리스트 및 직원의 과거 업무를 소급하여 검토하는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한다.</p>

위의 조항들은 신용평가의 독립성 확보와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된 것으로, 개정 전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신설, 보완됨으로써 실행방안과 내부절차 관련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Section 2.5의 경우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으로 비평가업무와 업무상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분리하며 새로운 기타 부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준법감시실과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Section 2.12는 신용평가와 영업업무간 분리되어야 한다는 IOSCO Code에 따라 보완된 조항입니다. 특히 영업부서 직원의 신용등급 결정이나 모니터링 혹은 평가서비스 제공 시 사용하는 모델이나 방법론의 개발 또는 승인에 참여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Section 2.16은 신용평가의 독립성 내지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잠재적인 경우에도 실질적 이해상충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Section 2.17에서는 퇴직한 직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관련하여 절차 외에도 정책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투자자 및 발행사에 대한 책임

개정전 KIS CoPC(2009.08)	개정후 KIS CoPC(2016.05)
<p>A. 등급공시의 투명성과 적시성</p> <p>3.2 KIS는 채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발행된 채무증권이나 혹은 그러한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사에 대해서 신규등급 부여, 등급조정, 혹은 철회 등의 Rating Action을 취한 경우 이를 일반대중에게 무료로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는 KIS의 홈페이지 게시, 언론기관에 대한 동시 전송 및 유료회원에게 대한 전송 또는 인쇄물을 통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대중은 발행사, 채무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권에 대한 현재시점에서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규등급 부여, 등급조정, 등급철회 등의 Rating Action 및 그 Rating Action의 배후 논리에 관한 간단한 설명은 KIS의 홈페이지에 최소 7일 동안 계속해서 게시된다.</p>	<p>A. 등급공시의 투명성과 적시성</p> <p>3.2 KIS는 채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발행된 채무증권이나 혹은 그러한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사에 대해서 Rating Action을 취한 경우 이를 일반대중에게 차별없이 무료로 공시하고, 해당 채무증권이나 발행사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러한 공시는 KIS의 홈페이지 게시한다.</p> <p>KIS는 공시 신용등급에 대한 Rating Action 중 신용등급공시자료가 수반되지 않는 Rating Action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p>
<p>3.6 KIS는 모든 신용등급공시에:</p> <p>(중략)</p> <p>(신설)</p>	<p>3.6 KIS는 신용등급 공시자료에 다음을 명시한다:</p> <p>(중략)</p> <p>(c) 해당 신용등급 관련 주요 등급 논리 요지;</p> <p>(d) 주요 평가 가정/요인 및 주요 평가 가정/요인의 민감성 분석 요지;</p> <p>(e) 신용등급 산정 시 사용된 중대한 중요정보 출처; 및</p> <p>(f) 각 신용등급의 속성과 한계 및 피평가사, 차주나 자산보유자(originator), 혹은 평가대상 채무증권의 인수기관(underwriter)이나 주간사(arranger)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KIS의 검증여부.</p> <p>신용등급공시자료는 KIS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문서를 의미할 수 있다..</p>
<p>3.7 KIS는 평가위원회 프로세스, 평가절차, 평가방법론에 관한 정보는 물론 발행사가 공시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정보와 크게</p>	<p>3.7 KIS는 평가위원회 프로세스, 평가절차, 평가방법론에 관한 정보는 물론 발행사가 공시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정보와 크게</p>

<p>차이가 나는 정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이 신용등급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p>	<p>차이가 나는 재무제표가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과 신용등급 이용자들이 신용등급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KIS의 등급체계(rating symbols and rating scales)는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p>
<p>(a) KIS는 구조화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 관련 손실기대치 및 현금흐름분석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 금융시장 전문가가 해당 신용등급에 대한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KIS는 구조화 금융상품 평가과정에서 수립하였던 기본 가정조건이 변동될 경우 신용등급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일 것인지 그 민감도를 분석하여 공시한다.</p>	<p>(a) KIS는 구조화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 관련 손실기대치 및 현금흐름분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여 금융시장 전문가가 해당 신용등급에 대한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KIS는 구조화 금융상품 평가과정에서 수립하였던 기본 가정조건이 변동될 경우 신용등급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일 것인지 그 민감도를 분석하여 공시한다.</p>
<p>(b) KIS는 현재 구조화 금융상품의 신용등급과 기타 자산에 부여하는 신용등급에 별개의 등급 체계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만약 KIS가 구조화 금융상품 신용등급에 대해 별개의 등급 체계를 채택하게 된다면 (i) 그러한 사실을 시장에 공표하는 동시에 (ii) 별개의 등급기호의 이용방법과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할 것이다. KIS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등급 기호에 대한 정의는 KIS의 홈페이지(www.kisrating.com)에 공시되어 있다.</p>	<p>(b) KIS는 모든 신규 및 기존 구조화 금융상품 신용등급에 (sf)부호를 삽입할 것이다. 해당 (sf) 부호는 KIS의 모든 신용등급공시자료 및 리서치 보고서에 기재된 신용등급에 추가하여 표시한다.</p>
<p>(c) KIS는 신용등급의 속성, 및 한계에 대해 명시하며, 평가대상 증권의 발행사 혹은 자산보유자가 KIS에 제공한 정보에 대해 검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러한 정보는 신용등급이 무엇인가에 대해 투자자들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p>	<p>(c) KIS는 신용등급의 속성, 한계, 투자나 기타 금융 의사 결정 시 신용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평가대상 증권의 발행사 혹은 자산보유자가 KIS에 제공한 정보에 대한 KIS의 검증 여부를 명시한다. 이러한 정보는 신용등급이 무엇인가에 대해 투자자들과 신용등급이용자들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p>
<p>3.22 KIS의 직원들은 KIS에게 제공된 기밀정보를 KIS의 계열사 직원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단, 그러한 직원이 적절한 기밀유지약정을 맺었음은 물론 이러한 기밀정보의 취급에 관한 KIS의 정책과 절차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밀정보를 신용평가활동</p>	<p>3.21 KIS에 제공된 기밀정보 또는 비공개정보는 KIS 직원들 사이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한다. KIS의 직원들은 KIS에게 제공된 기밀정보 혹은 비공개정보를 KIS의 계열사 직원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단 그러한 직원이 Rating Service와 관련한</p>

<p>의 지원을 위해서만 공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KIS 직원들 사이에서도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p>	<p>MIS의 대리인 또는 contractor 역할을 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며 적절한 기밀유지약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3.24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혹은 정부기관 또는 정부당국이 합법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IS의 평가과정에서의 내부심의내용 및 평가위원회 참석자의 신원은 철저히 기밀로 유지되며 KIS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p>	<p>3.23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혹은 정부기관 또는 정부당국이 합법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IS의 평가과정에서의 내부심의내용 및 평가위원회 참석자의 신원은 철저히 기밀로 유지되며 KIS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단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need-to-know)와 적절한 기밀유지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신용평가시 적용된 등급논리, 주요 평가 가정/요인, 신용등급 산정 시 사용된 중대한 중요정보 출처 등 등급산정 관련 정보는 등급 자체와 함께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신용등급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신용등급 공시자료에 등급산정 관련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나 기타 금융 의사결정 시 신용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평가대상 증권의 발행사 혹은 자산보유자가 신용평가사에 제공한 정보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검증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 Section 3.6 및 3.7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기밀정보의 공유가 가능한 경우와 평가위원회 참석 인원에 대한 정보의 외부공개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기밀정보 취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가강령의 집행 및 공시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제공

개정전 KIS CoPC(2009.08)	개정후 KIS CoPC(2016.05)
4.1 KIS의 경영진은 본 평가강령의 시행 및 집행에 대해 책임을 진다	4.1 KIS의 경영진은 본 평가강령의 이행 및 집행에 대해 책임을 진다. KIS 이사회는 이와 같은 책임을 감독한다.
4.2 본 평가강령의 규정들은 IOSCO 원칙 및 IOSCO 행동규범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KIS는 KIS의 사업방식과 관행에 좀 더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소간 수정하였다. 그러한 수정 사항들은 평가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본 평가강령과 IOSCO 행동규범(IOSCO Code)과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KIS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 (“평가강령 실행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4.2 본 평가강령의 규정들은 IOSCO 원칙 및 IOSCO 행동규범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KIS는 KIS의 사업방식과 관행 및 국내 감독기관이 채택한 법률에 좀 더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강령의 조항을 다소간 수정하였다. 그러한 수정 사항들은 평가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본 평가강령과 IOSCO 행동규범(IOSCO Code) 간의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KIS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 (“평가강령 실행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4.4. KIS는 자사 홈페이지(www.kisrating.com) 내에 (1) 평가강령 (2) 신용등급 부여시 사용하는 평가방법론 및 (3) 과거 신용등급 performance 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신설)	4.4. KIS는 자사 홈페이지(www.kisrating.com) 내에 (1) 평가강령 (2) 신용등급 부여시 사용하는 평가방법론 및 (3) 과거 신용등급 performance 및 (4) 본 강령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공시한다.
(신설)	4.5 KIS 준법감시부서는 시장참여자 및 일반대중이 제기한 불만(기밀유지조건으로 제기되는 불만 포함)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는다. KIS 준법감시부서는 모든 관련 불만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상부보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강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사회가 경영진의 평가강령 이행 및 집행에 대해 감독할 것을 규정화하였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사에 대한 외부 불만에 대응하는 업무의 주체를 준법감시실로 명문화하여 시장참여자 및 일반 대중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및 직원교육

개정전 KIS CoPC(2009.08)	개정후 KIS CoPC(2016.05)
(신설)	<p>5.1 KIS 준법감시부서는 본 평가강령의 절차 조항 준수 여부 실태를 점검한다. 준법감시부서는 KIS의 평가 업무와는 독립적인 보고라인을 따른다. KIS의 DCO 뿐 아니라 KIS 준법감시부서의 그 어떤 직원에게도 다음의 사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신용평가 수행; (2) 평가방법론 또는 모델 개발에 참여; (3) 마케팅 또는 세일즈 업무 수행; 또는 (4) KIS 준법감시부서 직원을 제외한 기타 직원의 보수 수준 결정 과정에 참여. 또한 KIS 준법감시부서의 모든 직원은 준법감시부서에서 업무를 시작한 시점과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이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KIS 준법감시부서에서는 DCO가 이와 같은 요건의 이행 및 집행 책임을 맡는다. 본 정책의 위반 행위를 인지한 직원은 해당 위반 사실을 KIS 준법감시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p> <p>5.1.1 DCO의 보수는 KIS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별도로 운영하며, DCO와 KIS 준법감시부서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고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p> <p>5.1.2 KIS는 DCO로 하여금 KIS의 평가 업무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전년도 준수 실태 (KIS 평가강령, KIS 이해상충규정 등의 중대한 개정 포함)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간 기밀 준법감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법으로 요구되는 경우나 DCO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간 준법감시보고서에 관련 증권법 준수실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p>

준법감시부서 관련하여 평가활동 및 영업활동 참여 금지, 기타 직원의 보수 수준 결정 과정 참여 금지, 준법감시인의 보수와 회사 경영성과의 별도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장을 추가하였습니다.

II. 평가강령의 실행 현황

평가과정의 질 및 공정성

평가방법론의 개발, 개정 및 적용 (1.1~1.3)

당사는 주요 평가방법론에 대해 2~3년 주기로 개정/보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내부 모니터링 절차에 의한 기존 평가방법론에 대한 점검이나 실제 평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방법론상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평가방법론의 개정 내지 신규 개발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론의 개발, 개정 및 적용은 당사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²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법론 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당사의 산업별, 자산별 평가방법론의 신규, 개정 현황을 보면, 평가방법론의 유의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 결과를 반영한 신규 개발 및 개정이 매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에 금융부문과 SF부문을 위주로 총8건의 평가방법론을 제·개정된데 이어 2016년~2017년 1월 기간 동안에는 총 8건의 평가방법론이 제·개정되었습니다.(아래 표 참조)

[최근 5년간 당사의 평가방법론 신규, 개정 현황]

부문	방법론	2012	2013	2014	2015	2016~2017년 1월
산업	제조업	-	-	-	개정	
	주류	-	-	폐지	-	
	음식료	개정	-	-	-	
	해운	-	개정	-	-	
	유통	-	-	-	-	
	철강	개정	-	-	-	개정
	병원	-	-	폐지	-	
	정유	-	개정	-	-	
	석유화학	-	개정	-	-	
	건설	-	개정	-	-	
	자동차	-	-	개정	-	
	자동차부품	-	개정	-	-	
	전선	-	-	-	-	

² 평가방법론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사는 평가방법론의 개발 및 개정, 적용 등의 제반절차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기존 지침에 산재되어 있던 평가방법론 관련사항을 재정리하여 2013년 12월 '평가방법론 운용에 관한 지침'을 신설하였음.

부문	방 법 른	2012	2013	2014	2015	2016~2017년 1월
	의류	-	-	-	-	개정
	전자	개정	-	-	-	
	항공운송	-	-	-	-	
	물류	신규	-	-	-	
	호텔/숙박	개정	-	-	-	
	도시가스	-	-	-	-	
	SI(IT서비스)	개정	-	-	-	
	조선	-	개정	-	-	
	공기업	-	-	-	-	
	지방개발공사	신규	-	-	-	개정
	통신서비스	-	-	개정	-	
	제약	-	-	-	-	
	시멘트	-	-	개정	-	
	레미콘	-	-	-	-	
	기계(중공업)	-	-	개정	-	
	제지	-	신규	-	-	
	미디어	-	신규	-	-	
	상사			신규	-	
	민자발전			신규	-	
	외식업			신규	-	
금융	은행	-	개정	개정	-	
	증권	개정	-	개정	-	
	상호저축은행	-	-	-	-	
	할부/리스금융	개정	-	-	-	
	신용카드	-	개정	-	개정	
	손해보험	신규	-	-	개정	
	생명보험	-	-	-	개정	
	금융공기업					신규
	기타금융업	-	신규	-	-	
SF	Structured Finance 신용평가 일 반론	-	개정	-	개정	
	Credit Facility	-	개정	-	-	개정
	신용카드 유동화	-	개정	-	-	
	오토론 유동화	-	개정	-	개정	
	기업매출채권 유동화	-	개정	-	-	
	리스채권 유동화	-	개정	-	개정	
	ABCP 프로그램	-	개정	-	-	
	장래채권	-	개정	-	-	
	PF Loan 유동화	개정	개정	-	-	
	Synthetic CDO	개정	개정	-	-	개정

부문	방법론	2012	2013	2014	2015	2016~2017년 1월
	CDO	개정	개정	-	-	개정
	MBS	개정	개정	-	-	
	CMBS	개정	개정	-	-	개정
	NPL ABS	개정	개정	개정	-	
PF	Loan Rating 일반	-	개정	-	-	
	유료도로 Loan Rating	-	-	-	-	
	주거용 부동산개발사업 Loan Rating	개정	-	-	-	
	비주거용 부동산개발사업 Loan Rating	개정	-	-	-	
	프로젝트파이낸스 Loan Rating	-	-	-	-	
	부동산 PF Loan Rating	-	-	-	-	
	Object Finance Loan Rating	-	-	-	-	
	외국인학교 개발사업 Loan Rating	-	-	-	-	
	회원제 골프장 개발사업 Loan Rating	-	-	-	-	
	산업단지 개발사업 Loan Rating	-	개정	-	-	
	국내 발전소사업 Loan Rating	-	-	-	-	
	부동산투자회사(REITs)	-	-	-	-	
	일반	Corporate 신용평가 일반	-	-	-	-
지주회사		-	-	-	-	
계열분석		-	-	-	-	
재무분석		-	-	-	-	
영업분석		-	-	-	-	
산업분석		-	-	-	-	
현금흐름		-	-	-	-	
유동성위험 분석		-	-	-	-	
경기변동과 신용평가		-	-	-	-	
부외부채와 신용평가		-	-	-	-	
합병 및 분할과 신용등급		-	-	-	-	
Foreign Currency Rating		-	-	-	-	
Sovereign Rating		-	-	-	-	
독자신용도 및 계열지원가능성 평가		-	신규	-	-	
Hybrid 평가		-	신규	-	-	
Fund 평가	-	-	-	신규		

특히, 평가방법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평가방법론 대비 변경된 내용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론 서두에 주요 변경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법론(‘현행’표기)과 과거의 평가방법론(‘종전’표기)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확보한 평가위원회 신용등급 결정기구 운영 (1.4, 2.1~2.5)

당사의 신용등급은 개인의 의견이 아닌,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회를 통해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가위원회는 신용평가 프로세스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모든 참석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반대의견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견도 충분히 고려됩니다. 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는 일정 수준의 평가경력이 있는 신용평가전문인력으로 구성되고, 평가대상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관련분야의 신용평가전문인력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신용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평가와 관련한 분석적 요인(analytical factors)만을 고려하며, 당사, 발행사, 투자자 및 기타 시장참여자에게 잠재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하여 등급결정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 그리고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평가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평가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이해상충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평가위원회 참석이 사전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자료 보관에 관한 절차의 운용 (1.5)

당사는 평가자료 보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평가자료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자료에 관한 지침’은 평가자료의 범위, 평가자료에 관한 일반원칙, 신용평가조서 작성 및 보관, 자료의 폐기 등 신용평가자료 보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절차를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가정책부서의 독립된 위상과 기능 (1.2, 1.7~1.8)

당사의 평가정책부서(Credit Policy Group)는 평가정책과 평가절차에 관한 제반 업무 및 원칙을 수립하고 신용평가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및 평가위원회 참여를 통해 신용평가 과정과 신용등급 결정의 독립성 및 신뢰성, 그리고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방법론의 검토 및 승인, 새로운 구조에 대한 신용평가의 수행타당성 검토, 기초자산 위험 특성 변화시 구조화 상품 방법론의 적합여부 판단, 각 평가그룹 간 주요 정책 및 관행의 조정 등을 주관하는 등 독립된 부서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용 (1.10~1.12)

당사는 새로운 실적자료를 토대로 일정 시점에 신용등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는 것(당사는 이를 “정기평가”라 지칭함) 외에도 신용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화에 따라 적절한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다양한 사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요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KIS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 분	주요 내용
정기평가	평가대상기업의 의뢰와 상관없이 유효등급 업체 모두에 대해 새로운 실적자료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기존 평가시 고려하였던 산업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계열위험 등의 유의적인 변화가 없는 지를 점검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연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
수시평가	유효등급 업체 중 신용등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화가 발생하여 신용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 관련자료를 토대로 신용도의 변동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에게 변화된 신용평가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시행
Watchlist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Event가 발생했을 경우 이로 인한 ‘등급의 변동 방향성 예고’이자 ‘기부여된 신용등급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임을 알리는 것으로서 수시평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Credit Issue Review (CIR)	인수합병, 큰 폭의 자본변화, 거액의 투자발생 등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Credit Issue가 발생하는 경우 등급의 변경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200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음.
Portfolio Review	산업 동향 및 주요 Credit Issues 등의 파악, 산업별 평가방법론 및 개별업체의 신용등급 검토 등을 통해 신용등급의 일관성 및 평가방법론의 적합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적인 모니터링으로서 200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되고 있음.
평가방법론 검토	SF부문 및 PF부문의 산업별, 자산별 평가방법론의 적합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연 1회 관련 평가방법론에 대해 검토(기업 및 금융평가부문의 평가방법론에 대한 검토는 상기 Portfolio Review 시 이루어지고 있음).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지침의 체계화 - 신용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1.13~1.20)

신용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업무 전반에 관한 지침을 체계화하여 모든 신용평가 과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신용평가 절차, 평가위원회 운영, 신용등급 공시, 사후관리, 기밀유지, 평가자료 관리, 보고서 작성 및 검토, 부수업무 및 비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등 신용평가의 실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여 각각의 업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 업무와 절차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 일반적인 신용평가절차, 평가위원회 운영, 신용등급 및 보고서 공개와 갱신 등과 같은 신용평가 업무의 주요 절차와 핵심원칙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및 이해상충 방지

신용평가부문과 영업부문 및 다른 사업부문 간 분리 (2.5)

당사는 신용평가의 독립성 제고와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업무처리,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신용평가부문의 조직과 영업부문 및 다른 사업부문의 조직을 분리·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 및 정보의 교류도 일정한 조건과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과 신용평가 계약 체결 및 평가의뢰·권유 등의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2009년 8월부터 별도의 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조직에서 수수료 논의의 담당했던 직원이 신용평가를 포함한 다른 사업부문의 조직으로 이동할 경우 수수료를 논의한 지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신용평가업무 또는 부수업무(PF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조직(PF평가부문) 또한 영업부문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부문의 조직과 분리·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부수업무의 조직에서 신용평가부문의 조직으로 이동 시 부수업무의 조직에서 담당했던 업체와 관련된 신용평가업무에 1년 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신용평가부문의 조직에서 부수업무의 조직으로 이동 시)에도 동일하게 부수업무 참여가 제한됩니다.

당사는 특히 평가와 영업의 분리원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2015년 5월 ‘부적절한 자료 및 정보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문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도하지 않게 (inadvertently) 부적절한 자료 및 정보³에 노출될 경우 그러한 사실을 준법감시실에 신고 및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경우에 따라선 거래상대방에게 유의사항 안내문(Boiler Plate)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치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료 및 정보가 회사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 내지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운용 (2.5~2.7)

당사는 신용평가 업무 이외에 컨설팅 등과 같은 신용평가 프로세스와 관계없는 비평가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평가 프로세스와 관련되기는 하나 반드시 그것에서 비롯되었다고 규정할 수 없는 부수업무-자본시장법시행령 제324조의7에 규정된 신용평가업무에 부수하여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써 당사 ‘Project Finance본부’(PFG)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에 대한

³ 부적절한 자료 및 정보의 내용(당사 가이드라인 기준)

- 신용평가부서 기준 - 영업관련 자료 및 정보 등 : 평가의뢰(요청) 및 평가약정 체결, 평가약정서 수령, 수수료 문의 및 협의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
- 영업부서 기준 - 평가관련 자료 및 정보 등 :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령 내지 요청,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응답 등 평가업무와 관련된 사항

대출원리금 상환가능성 평가'(사업성평가) 등이 이에 해당-를 하고 있습니다(KIS CoPC '용어의 정의' 참조).

이에 당사의 부수업무와 신용평가업무 간 이해상충이 발생될 소지는 크지 않지만, 이들 업무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IOSCO Code의 이행을 위해 당사는 신용평가와 부수업무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당사의 신용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부수업무인 대출원리금 상환가능성 평가를 의뢰한 경우 또는 부수업무를 제공받은 업체가 신용평가 등급을 요청한 경우 등에 대해 업무 수행시 이들 업무 간 Firewall의 위반가능성 여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의 최소화를 위한 업무수행 방법, 그리고 업무수행 사실에 대한 관련정보의 공시 방법 등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인(의뢰인) 관련 정보공개 확대 계약체결 내역, 업무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의 공시 (2.8)

당사가 신용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부수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했었는지 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지를 평가의견에 공시해 오고 있으며, 이것은 신용평가업무와 부수업무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이해상충 발생 시 이해상충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상충 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당사는 2013년 2월부터 당사와 요청인(신용평가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당사에 의뢰한 자) 간 맺은 계약체결 내역 등을 포함하여 정보의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신용평가업무의 요청일, 계약체결일, 평가종료일 외 당사가 요청인에 대해 최근 2년간 수행한 다른 신용평가업무 및 부수업무의 건수 및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청인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한 것은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신용평가업무가 이해상충 등으로 인한 문제없이 내부절차에 따라 통제·관리되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수수료 논의(Fee discussion) 금지 (2.12)

특정 부서 또는 인원(주로 영업부문의 조직에 해당) 외에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임직원은 수수료 논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임직원이 수수료 논의에 참여한 경우 당사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업체의 신용평가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의 수수의 엄격한 제한 (2.15)

편의 수수라 함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요청인, 이해관계자 및 거래상대방 등에게 금전, 식사 및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가 정한 편의 수수 한도 내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 내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편의 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편의 수수 관련 내부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도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편의 수수의 내용이 내부 규정에서 벗어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는 관련업체의 신용평가 과정에 6개월의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⁴

퇴사자의 과거 업무에 대한 검토 (2.17)

당사는 신용평가업무에 참여했던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업무상 상당한 관계가 있었던 발행사 혹은 금융기관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전문인력이 과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행했던 업무를 소급하여 점검하고 그것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최근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한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법률이 2013년 8월 29일 기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로 변경되고, 이에 따른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신용평가회사의 편의 수수 관련 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2013년 9월 말 개정)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르게 되었음. 이에 당사는 금융투자업규정에 의거 관련사항을 위임 받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2013년 10월 이후 재산상 이익(편의)의 기준 등 일반적 사항 외에 신용평가부문과 그 외의 사업부문 등을 구별하여 구체적인 내부 기준 및 절차 등을 개정,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음.

등급공시의 투명성과 적시성

평가이력(Rating Action) 및 적용 평가방법론의 명시 (3.1~3.6)

당사는 이해관계자들이 해당업체의 과거 신용등급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의 신용평가이력(평가일자, 평가종류, 평가등급 및 관련 Action)을 평가의견에 표기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각적으로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에 적용된 평가방법론이 무엇이고, 그 평가방법론의 내용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고자 평가의견의 마지막 부분에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평가방법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주요 Factor들이 검토되었는지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평가방법론의 명시와 관련하여 당사 평가의견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예시한 것입니다.

(예시 1 – 적용된 평가방법론이 있는 경우)

동 평가에는 XX산업 평가방법론을 주요 방법론으로 적용하였으며, 기타 일반 방법론도 평가과정에 참고하였다. 동 방법론 및 기타 방법론은 “www.kisrating.com/Research/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시 2 – 적용된 평가방법론이 없는 경우)

동 평가에는 동사의 신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i) 영업환경 및 경쟁력, ii) 사업안정성, iii) 수익창출력, iv) 재무안정성 및 v) 최대주주인 XX(주)의 지원가능성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서 분석하였다. 상기 요인 이외의 기타 일반 방법론도 평가과정에 참고하였으며, 기타 방법론은 “www.kisrating.com/Research/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용평가에 관한 추가 정보 (3.7)

당사가 부여한 구조화 금융상품의 신용등급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신용등급이 도출된 논리적 근거를 파악하는데 좀더 도움을 주고자 관련 평가방법론에 현금흐름분석(손실기대치 포함)을 보강해오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발표된 SF부문의 평가방법론 대부분은 현금흐름분석과 관련된 Tool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평가방법론은 당사 홈페이지(www.kisrating.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본 보고서 ‘평가방법론의 개발 및 개정’ 참조).

* 유의사항 *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당사”)가 공시하는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뜻하며, 당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 등 리서치 자료(“간행물”)는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란 만기 도래하는 계약상의 채무(financial obligations)를 발행사기관이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 및 부도시 예상되는 금융손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금융 신용등급은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변동성, 조세 및 법 제도 변경 등의 기타 다른 위험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등급과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또한 간행물에는 계량모델에 근거한 신용위험의 추정치와 관련 의견 또는 키스채권평가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투자자문이나 금융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언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나 간행물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 또는 권유나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만 하며, 특정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의 적격성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각 투자자가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고려중인 증권 각각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간행물을 발표합니다.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수령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 아니므로 신용평가와 간행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있어서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당해 신용등급이나 기타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상업성 또는 특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당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한 어떠한 간접, 특별,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현재 혹은 장래의 손실 당사가 부여한 특정 신용등급의 대상이 아닌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사전에 그 같은 손실 또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자신들의 과실(단, 고의 또는 기타 법률상 배제될 수 없는 종류의 책임은 제외함) 또는 자신들의 통제 범위 내에 또는 밖에 있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되어,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한 어떠한 직접 손실이나 손해 또는 보상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 등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나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복제 또는 재생산, 배포장, 전송, 전달, 유포, 재배포 또는 재판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신용등급의 속성 및 한계 등에 대한 내용을 위와 같이 평가의견 ‘유의사항’에서 제공(본 보고서 ‘KIS 및 신용등급 개요’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부터는 신용평가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한다는 방침 아래 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별 최근 1년간 부도율, 그리고 신용평가등급 산정시 활용한 중요자료 목록 등도 평가의견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 언급한 요청인(의뢰인)과의 계약 체결내역 등을 비롯해 신용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확대하여 공시하는 것은 신용평가에 관한 공시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신용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신용평가결과의 활용도 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신용평가 실적(Rating Performance)에 대한 분석 및 공시 (3.10)

당사는 2004년 ‘부도율 분석(Default Study)’에 이어 2005년 ‘Rating Performance Analysis(1998~2004년)’라는 제목하에 ‘신용등급과 시장수익률간의 비교 및 차이분석’과 함께 부도율 분석, 개별 부도기업 및 신용등급 변동현황 등에 관해 통계적 자료를 포함하는 분석보고서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의 시기와 분야를 연간 단위에서 분기단위로, 회사채(Bond)에서 기업어음(CP), ABS 분야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이나 금융감독당국이 당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의 performance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성과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해의 폭을 보다 넓히기 위해 시장에서 검증 가능한 계량화된 통계기법 등에 따른 결과 등을 표준화된 체계를 갖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performance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으로는 등급의 일관성(Consistency)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는 투자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당사가 공시하고 있는 Rating Performance 관련 보고서 목록이며, 각 보고서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israting.com/research/ratingperformance.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S Rating Performance 관련 보고서 현황]

보고서	대상	주요 내용
Bond Rating Performance	1998년 이후 분석 연도까지 장기간의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 추이에 관한 분석(연 1회)	- 부도율 분석: 연간부도율, 부도율의 변동성, 평균누적부도율, 부도기업 분석 등 - 신용등급 변동현황 분석: 등급분포, 연도별 등급변동 추이, 신용등급 변화표(전이행렬) 등 - Outlook과 Watchlist 분석
CP Rating Performance	1998년 이후 분석 연도까지 장기간의 기업어음 신용등급 추이에 관한 분석(연 1회)	- 최근 기업어음 시장동향 - 기업어음과 회사채 등급 간 상관관계 분석 - 신용등급 변동현황 - 부도율 분석
ABS Rating	2000년 이후 장기간 또는 연간 기준 자산유동	- 최근 자산유동화증권시장 동향

Performance	화증권(ABS) 시장현황 및 신용등급 추이에 관한 분석(연 1회)	- 신용등급 변동현황 및 신용등급 변화표(전이행렬) - 부도율 및 부도기업 분석
신용등급과 시장수익률간 차이분석	당사 신용등급과 해당 채권의 시장수익률(BIR)의 추이 및 차이 등에 대한 원인 분석(연 2회-상/하반기)	- 회사채 시장동향 - 신용등급과 BIR 비교 및 차이분석 - 주요 차이발생 업체 분석
회사채 신용등급 변동현황	분기 단위로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 추이에 대한 결과 분석(연 4회)	- 신용등급 분포 - 등급변동 현황 - Outlook과 Watchlist 현황

평가강령의 집행 및 공시 및 시장참여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4.1~4.5)

KIS CoPC는 신용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 및 투명성 등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명시함으로써 당사의 신용평가업무 수행의 기본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KIS CoPC를 대외적으로 공시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그것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당사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 시 사용하는 평가방법론, 신용평가 관련 실적(Rating Performance) 및 연구성과물은 물론 평가정책 및 그것에 관한 자료 등을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CoPC 개정에 맞추어 시장참여자 및 일반대중 등 회사 외부에서 당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및 직원교육

준법감시부서 인원의 독립성 (5.1)

표준내부통제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포함한 준법감시부서의 평가활동이나 영업활동, 기타 직원의 보수 수준 결정 과정에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의 보수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기본급과 연동되도록 책정되어 있어 회사 경영성과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 (5.2)

당사는 전문가적 지식과 양심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한 축인 신용평가사의 임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가적 소양과 책임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 기반이 됨을 인지하고, 오래 전부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최대주주인 Moody's와 연계하여 Moody's에서 주관하는 신용평가방법 등과 관련된 일반과정부터 고급과정 에 이르는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에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에 따라 연간 교육이수시간은 달라지지만 신용평가전문인력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간 20 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의 정책 방향과 임직원의 개인별 관심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내·외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II. KIS CoPC와 IOSCO Code 와의 차이

Section 1.7- 평가정책부서의 역할

IOSCO Code (2015.03)	개정후 KIS CoPC(2016.05)
1.12 신용평가회사는 현재 평가한 법인 또는 채무와 실질적으로 다른 특정 형태의 법인 또는 채무에 대한 신용등급 제공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1명 이상의 선임 관리자(senior managers)로 구성된 평가기능(review function)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정책부서는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1.7.1. 과거에 KIS 가 평가했던 구조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에 대한 신용평가의 수행타당성 검토 1.7.2 KIS 가 사용하는 평가방법론과 모델 및 그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한 정기적 검토 1.7.3 구조화 상품의 기초자산의 위험특성에 종대한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해 기존의 평가방법론과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 판단 구조화 상품이 새롭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KIS 는 그 상품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와 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IOSCO Code는 과거 평가했던 구조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에 대한 신용평가의 수행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지정된 관리자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사는 평가정책부서가 평가정책과 평가절차에 관한 제반업무 및 원칙 수립, 평가기법의 개발 및 관리 등 평가정책 관련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기능을 평가정책부서의 역할에 포함시켜 운영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Section 3.3 – 구조화 금융상품 관련 정보

IOSCO Code (2015.03)	개정후 KIS CoPC(2016.05)
2.9 신용평가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의 발행자가 평가받는 채무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고 신용평가회사에	3.3 KIS 는 구조화 금융상품의 발행사 및 자산보유자들에게 해당 상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시하도록 장려한다.

밝혔는지 아니면 비공개정보로 유지한다고 밝혔는지에 대해 신용평가 발표 시 공시하여야 한다.

IOSCO Code는 구조화 금융상품 발행자의 신용평가대상 채무와 관련된 정보 공시 여부를 신용평가사에 알려줬는지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 CoPC에서는 구조화금융상품 시장환경을 반영하여 구조화 금융상품의 발행사 및 자산보유자들에게 해당 상품 관련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